

제332회 임시회
교 육 위 원 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5. 9

서울특별시의회
정준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은평4)

-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은
교육의 본질적 책무이자,
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.
-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
발생할 가능성이 있고,
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, 교직원들이
보상 절차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해
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
있습니다.
- 이에 본 개정안은 교육기관의 장이
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, 교직원,
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을
안내하도록 의무화하여,
피공제자가 지급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
제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들이
제도적 보호망 안에서 두텁게 보장받고,
불필요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
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
실질적인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길 희망하며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